



## 건축법 시행규칙 (2005. 6. 29 공포, 7. 20 부터 시행)

###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 다음의 건축물에 대한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계산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구조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술능력이나 자격을 갖추었다고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자(이하 '구조기술사' 등이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1. 층수가 16층 이상인 건축물
2. 기둥과 기둥사이의 거리가 30미터 이상인 건축물
3. 다중이용 건축물
4. 캐노피 등 캔틸레버 구조로서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3미터 이상 돌출된 건축물 (추가사항)



## 건축법시행령 일부개정령 (2005. 7.18. 개정안 공포, 즉시시행)

### 1. 제안이유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구성 심의방법 및 기준을 구체화하고, 내진설계대상을 확대하여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하며, 다세대주택의 일조권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한편,

「건축법」이 개정(법률 제7511호, 2005. 5. 26 공포 시행)되어 종전에 대통령령에 규정되었던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정리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건축위원회 운영개선(제5조)

- (1) 지방건축위원회 심의가 구조안전 피난 및 소방 등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으나 내용이 부실하여 공익성 증대 효과가 적고, 형식적인 절차로 인식되는 면이 있으며, 비전문가의 심의 참여나 비공개 심의로 인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도 중복심의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음.
- (2) 건축심의의 내용을 건축물의 건축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위원구성 및 심의방법 등을 개선하여 전문성이 없는 자를 배제하고 심의 내용의 공개를 의무화하며,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심의를 한 경우와 특별시 광역시·도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도록 함.
- (3) 건축심의의 중복 방지 및 심의과정의 공개 등을 통하여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내진설계대상 건축물 확대(제32조 제2항)

- (1) 우리나라는 지진구역으로서 연평균 약 50회의 지진이 발생하나 내진설계는 중·대규모 건축물에 한정하고 있어 소규모 건축물은 지진발생시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나 재산피해가 우려됨.
- (2) 내진설계 의무화 대상을 6층 이상 또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대함.
- (3) 지진 등 재해발생시 붕괴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건축물의 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공동주택바닥충격음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 개정 (2005.6.30고시, 즉시시행)

가. 표준바닥구조는 구조별로 5종을 제시하고 온돌층을 제외한 콘크리트 슬래브 바닥두께를 벽식 및 혼합구조는 210mm이상, 라멘 구조는 150mm이상, 무량판구조는 180mm 이상으로 함.